

# 국어 영역

## [1~5] 2021수능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특정 행위를 급부라 하고, 특정 행위를 해주어야 할 의무를 채무라 한다. 채무자가 채권을 ㉠ 가진 이에 게 급부를 이행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한다.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해주어야 할 의무를 **채무**라고 한다.

채무자가 **그러한 채권**을 가진 사람에게 **보통 재화나 서비스인 급부**를 이행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한다.

->

**\*\* '이 특정 행위를 급부라 하고, '급부' 와 같이 '앞 문장에 있는 말을 설명해주는 문장'은 앞 문장에 붙여 읽어준다.**

- 여기서는 채권의 개념을 정의하는 첫 문장에 '특정 행위'에 급부를 넣어 읽어주고, 세 번째 문장의 '급부'에 네 번째 문장을 붙여 읽어주는 것. 붙여 읽는 것의 실효성은 글을 논의범주 단위로 끊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즉, 1문단에서는 아직 '채권의 개념 정의'와 '채권에 따른 급부 이행 시 채무 소멸'이라는 논의범주까지 밖에 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채권' 과 같이 개념 정의된 말은 뒷 문장에 다시 나왔을 때 넣어 읽으면서 해당 문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여기서는 채권의 개념을 세 번째 문장에 넣어 읽어주는 것.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급부를 이행하면 채무는 소멸한다.

민법상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의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 계약이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서,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되지만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위해 '예약'이 활용된다. 일상에서 예약이라고 할 때와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은 구별된다. ㉠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을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고도 하지만 이 경우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다. 법적으로 예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다른 계약인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민법상의 권리는 <- **계약의 효력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때 계약이란 권리 발생 등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로서, 성립 시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된다.

아 그래서 앞 문장에서도 **계약의 효력에 의해** -> 민법상의 권리가 발생한 것이군.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되지만 <-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위해 <- **예약이 활용된다.**

아 '**확보 방법**'이 기준점인 것 같다.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서,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서인데 이를 위해 예약이 활용된다고. 어 근데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킨다? 아까 위에서 계약의 효력에 의해 -> 민법상의 권리가 발생된다는 구도는 봤었는데 급부로 한다는 것은? 아아 앞의 채권에서의 급부구나! 민법상의 권리가 채권을 말하는 것이었네.

정리해보자면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것을 계약의 효력을 통해 발생하는 채권의 급부로 하여 확보하는 거네. 그럼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는? 계약이 아니라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예약이 활용된다고?** 그럼 우선 **예약**을 활용해 ->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 **계약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네. 이 순서대로 읽어줘야겠다. **서두에서의 큰 논의범주 방향 설정 완료.**

일상에서의 예약이라고 할 때와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은 구별된다.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을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고도 하지만 이 경우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다.** <-**법적으로 예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다른 계약인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예약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고 있는 것 같다. 일상에서의 예약은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고 법적으로 예약은 계약의 일종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급부 내용으로 하는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고.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예약'은 법적인 측면의 예약인 것 같고, 그것은 계약의 일종으로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킨다. 즉 **계약인 예약의 효력으로 발생하는 권리가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인 것이네.** 본계약의 효력을 통해 발생하는 채권의 급부 내용으로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확보하고.

정리해보자면, **법적인 예약**이라는 계약의 효력을 통해 ->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키고 -> '본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하는 채권의 급부 내용으로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확보한다.** **서두에서의 큰 논의범주 닫고.**

->

**\*\* '계약이란'과 같이 '앞 문장에 있는 말을 설명해주는 문장'은 앞 문장에 붙여 읽어준다.**

**\*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는'과 같이 대립되는 의미의 서술은 어떤 기준점에서 차이점을 갖는지 파악해준다.**

- 여기에서는 '확보방법'을 기준으로 찍어준다. 아 당장 필요한 것과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은 '확보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라고 기억하고 넘어간다.

Tip. 주의할 점은 기준점을 파악하는 데에서 만족하지 말고 기준점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 번씩 생각해두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 여기에서는 각각의 확보방법이 어떠한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 예컨대 당장 필요한 것은 그것을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 권리의 급부로 하여 확보했고 <->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은 우선 계약을 통해 ->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 본계약의 효력을 통해 발생하는 채권의 급부내용으로 확보했었다. **여기에서 어 어떻게?라는 생각을 단초로 하여 앞에서 정리했던 '채권'의 개념과 '계약의 효력을 통해 -> 민법상의 권리가 발생한다'는 구도를 연결지어 생각해볼 당위가 발생한다.**

**\*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의 확보방법보다는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확보방법에, '일상에서의 예약'보다는 '법적으로 예약'에 주목하여 논의를 이어 나간다.**

- 대비는 결국 핵심 대상을 강조하기 위해 보조 대상을 붙여주는 작업이다. (뒤에서 예약을 두 유형으로 나눈 것처럼 수평적으로 논의를 펼치는 경우는 제외) 따라서 보조 대상과 핵심 대상은 어떠한 기준점에서 차이를 갖는지 정도 간단하게 파악한 뒤 핵심 대상의 논의를 이어 나가는 데에 집중해줄 필요가 있다.

**\*\*\* 앞에서 정리한 개념/서술 등이 재진술,구체화/대비되고 있을 때 그것을 끌고 내려와서 넣어 읽는다. => 상향식 독해**

-여기에서는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그것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확보하지만'을 보고 '채권'과 '계약의 효력을 통해-> 민법상의 권리가 발생'이라는 서술을 끌고 내려와서 아 계약의 효력을 통해 발생하는 권리가 채권이었고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그것의 급부로 하여 확보한다는 거구나 하고 넣어 읽는 것.

Tip.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식 독해가 익숙한 우리 학생들은 앞에서 정리된 개념/서술 등을 끌고 내려와서 넣어 읽는 상향식 독해에 상당히 애를 먹는다. '이/그/저(러한), 만, 도' 등과 같은 지시어와 보조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의미 차원에서 '어 아까 (안)이랬는데? 아까 이거 있었는데?'와 같은 '느낌'을 받아 눈을 위로 돌리는,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행동임에는 분명하다. 다만 이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앞에서 '채권'의 개념을 명확하게 잡아둘수록, 한 문장의 의미를 -> 등으로 분절적으로 잘 받아들일수록, (또 여기에서는 특별히 대조되는 서술에서 '기준점 바탕으

로 차이점 인지'라는 행동을 명확히 취했을수록) 돌아가는 데에 대한 당위가 분명해진다. 다른 생각과 행동들을 연습을 통해 습관화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반응지점들에 대한 경험치를 쌓고, 이를 바탕으로 실전에서 상향식 독해가 잘 발현되도록 하는 것이 어쩌면 수능 독서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지향하셔야 할 지점일 것 같다. 당장 못했어도 괜찮으니 충분한 연습을 거치자.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A를 위해 (- B(를 위해 (- C)와 같이 하고 싶은 얘기 바로 쓰지 않을 때에는 A를 기대하면서 (C와) B를 버려낸다.**

- 여기에서는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확보방법(A)을 위해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확보(B)와 이를 위해 활용되는 예약(C)을 버려내는 것. 예약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고 있는 것 같다 하고 잠시 일상에서의 예약과 법적으로 예약의 구분을 버려 준다.

Tip. A<-B(<-C)는 주로 지문의 지배적인 방향이나 흐름(서두에서의 첫 논의범주)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19학년도까지는 A가 지문 마지막 부분에서야 확보되었을 만큼 길게 글을 늘어두었는데, 20학년도부터는 바로 다음문단 정도에서, 혹은 여기에서처럼 2~3문장 정도의 간격만 두고 바로 확보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후술되는 문단들은 앞에서 자세한 설명 없이 지나간 문장(혹은 개념, 어구)에 대한 구체화나 새로운 논의범주(흐름/방향)를 가져와서, 명시적인 표지 없이 스스로 앞 문단들과의 관계를 붙여 나가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자.

예약은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채권의 급부 내용은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다. 회사의 급식 업체 공모에 따라 여러 업체가 신청한 경우 그중 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회사에서 통지하면 예약이 성립한다.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㉞ 받기로 하는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진다.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경우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켰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한다. 가족 행사를 위해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식당에 도착하여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하므로 식사 제공이라는 급부에 대한 계약상의 채권이 발생한다.

예약은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앞 문단에서 봤던 예약이라는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눈다고. 어 근데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라는 게 뭐지. 아 아까 예약을 통해 ->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다고 했었지. 그 권리를 법적 성질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겠다고 하네.

첫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채권의 급부 내용은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다.**

예약의 첫 번째 유형의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는 채권인가보다. 채권은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였지. 예약상 권리자는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겠다.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 성립요구를 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에 따라 본계약이 성립하네.

회사의 급식업체 공모에 따라 여러 업체가 신청한 경우 그중 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회사에서 통지하면 **예약이 성립한다.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는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진다.**

예약의 성립을 통해 선정된 업체가 채권을 갖고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한 승낙이라는 급부를 요구하면 회사가 이에 응할 의무인 채무를 지는 것까지 읽었네. **본계약의 효력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갖는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겠다. 급부로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인 대금을 확보하는 거네.**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경우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한다.**

예약의 두 번째 유형의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는 예약완결권인가보다.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한다면 아까는? 채권의 급부로 승낙이 필요했었다. 지금은 예약완결권을 가진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만 하면 본계약이 성립한다고 하네.

**가족 행사를 위해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식당에 도착하여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하므로 식사제공이라는 급부에 대한 계약상의 채권이 발생한다.**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만 하면 예약완결권의 행사로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하고 그 효력에 따른 계약상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까지 읽었네. **본계약의 효력에 따라 예약한 사람이 식사제공이라는 급부에 대한 채권을 갖겠다. 급부로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인 식사제공을 확보하는 거네.**

->

**\*\* 서두에서의 첫 논의범주(방향/흐름) 종료 후 이어지는 다음 문단에서는 앞 문단(들)과의 관계를 설정해 주어야 한다. 보통 해당 문단의 논의범주가 그렇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이미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확보를 위해 <-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가 필요했고 <- 이를 위해 예약이 활용되는 첫 논의범주가 종료된 후, 다음 문단에서 '앞에서 설명한 예약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를 인지하는 것. 이에 따라 해당 문단에서는 예약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방향/흐름으로 잡아줄 수 있다.

**\*\*\* 앞에서 정리한 개념/서술 등이 재진술,구체화/대비되고 있을 때 그것을 끌고 내려와서 넣어 읽는다. => 상향식 독해**

여기에서는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을 보고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끌고 내려와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넣어 읽는 것.

'첫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를 보고 '채권'의 개념인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끌고 내려와 아 예약상 권리자는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겠다 하고 넣어 읽는 것.

**\*\* 예시는 앞 뒤 문장에 제시된 개념/서술을 그대로 넣어 읽어 해당 개념/서술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 여기에서는 **예약상 권리자가** 채권의 급부 내용으로 승낙을 설정하여 **본계약을 성립시킨다는** 내용을, **선정된 업체가**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회사는 이에 따라 **승낙할 의무인 채무를 지고** 이에 따라 **본계약이 성립하네** 하고 넣어 읽는 것.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된다는** 내용을,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만 하면 예약완결권의 행사로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하네** 하고 넣어 읽는 것.

**\*\*\* 같은 위계/층위에 있는 둘 이상의 대상/주장은 두 번째 대상에서 첫 대상으로 거슬러 올라가 기준점을 바탕으로 차이점을 인지해주어야 한다. => 상향식 독해**

- 여기에서는 두 번째 대상인 예약 완결권에서 채권으로 거슬러 올라가 '어떠한 기준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파악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명시적으로 '예약상 권리자가 갖는 권리 =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기준으로 제시해 주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채권과 예약완결권이 각각 어떻게 본계약을 성립시키는지까지를 읽어내는 것.

+ 想以懸 '예약'이라는 정보는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확보를 위해 <-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데에 <- 활용되는 맥락 하에 있다. 따라서 예약을 두 가지로 나눌 때 그 기준점을 바탕으로 각각의 차이점을 읽어내는 데에 그치지 말고, 어떻게 예약을 통해 ->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여 ->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확보하는지 까지를 읽어내야지.

- 여기에서 첫 유형에서는 본계약의 효력을 통해 발생하는 채권의 급부 내용으로 '대금지급'을 확보하는 것까지를, 두 번째 유형에서는 본계약의 효력을 통해 발생하는 채권의 급부 내용으로 식사제공을 확보하는 것까지를 읽어냈으면 완벽했다.

예약에서 예약상의 급부나 본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 생길 수 있는데, 예약의 유형에 따라 발생 문제의 양상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이로 인해 채무의 내용이 바뀌는데 원래의 급부 내용이 무엇이든 채권자의 손해를 돈으로 물어야 하는 손해 배상 채무로 바뀐다.

예약에서 예약상의 급부나 본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예약의 유형에 따라 -> 발생 문제의 양상이 다르다.

앞에서 봤던 예약의 두 유형에 따라 예약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야기하겠다고.

일반적으로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이로 인해 -> 채무의 내용이 바뀌는데 원래의 급부 내용이 무엇이든 -> 채권자의 손해를 돈으로 물어야 하는 손해 배상 채무로 바뀐다.

어 근데 예약의 유형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문제 양상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설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네.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채무자가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고 / 이로 인해 원래의 급부 내용이 무엇이든 기존의 채무가 손해 배상 채무로 바뀐다고. 그럼 손해 배상으로 손해라는 문제의 이유가 해소되겠네.

->

\*\* 서두에서의 첫 논의범주(방향/흐름) 종료 후 이어지는 다음 문단에서는 앞 문단(들)과의 관계를 설정해 주어야 한다. 보통 해당 문단의 논의범주가 그렇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 여기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예약의 두 유형에 따라 예약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를 방향/흐름으로 잡아주는 것.

\* 서두에서 첫 논의범주로 잡은 정보이든 두 번째 이상부터의 것이든 그것을 바로 구체화(설명)해주지 않는다.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을 때는 그 이야기부터 잘 정리해둔 뒤 다시 해당 논의범주로 복귀하는 시점을 확보해 거기서 논의범주를 닫아준다.

- 여기에서는 예약의 유형에 따른 문제양상이 곧바로 구체화되지 않을 때 잠시 일반적인 경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잘 정리해두는 것.

Tip. 문단과 문단 사이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생각보다 학생들이 잘 버텨내는데, 유독 문단 내의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잠시 논의가 붕 뜨면 잘 견디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요새는 문단과 문단 사이에 긴 정보량을 투하하여 간격을 두기보다는 구체화되지 않은 '한 문장/어구'를 뒷 문단으로 빼서 구체화하는 식으로 간격 띄우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잠시 논의가 붕 뜨는 것 같을 때는 일단 다음 얘기로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뒤에 다시 아까 마저 보지 못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 아까 그거 하면서 연결해주도록 하자. 예컨대 2006 키트 지문에서 키트 방식에 따라 특정 물질의 종류가 다르다는 논의범주를 볼 것으로 예상했는데 다음 문장에서 갑자기 반응막에서의 항체 결합이라는 다른 논의범주가 나왔던 경우. 이는 바로 뒤 문단에서 키트의 방식을 두 개로 분류하면서 각각에 따른 특정 물질을 구체화할 때 연결해두면 충분했다.

\* 문제와 해결이라는 흐름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가 왜 문제인지', '해결책이 그 문제의 이유를 어떻게 해소하는지'를 이해하는 작업이다. 단순히 문제와 해결이라고 활자만 읽어내면 아무런 의미가 생기지 않는다.

- 여기에서는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 '손해'가 생기는 것을 이유로, 결국 손해 배상 채무로 '손해'를 돈으로 물어서 이유를 해소하는 데 까지 확인하는 것.

+ 이상이론 : 상향식 독해는 결국은 누적된 기출의 경험치를 통해 발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여기에서 첫 문장에서 굳이 굳이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를 '예약상의 급부'나 '본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라고 분절적으로 제시하였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위를 좀 쳐다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예약상의 급부는 첫 유형에서는 채권의 급부인 승낙이지만 두 번째 유형에서는 딱히 없고, 본계약상의 급부는 첫 유형에서는 대금지급이고 두 번째 유형에서는 식사제공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래의 급부 내용이 무엇이든 (채무가) 손해 배상 채무로 바뀐다고 했으면 원래의 급부 내용과 그에 따른 채무가 무엇이었는지 확인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예약상의 급부'와 '본계약상의 급부'로 거슬러 올라가서 위에 언급한 행동을 보일 수 있었다.

실제로 반응할 포인트가 두 지점이나 존재했음에도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 행동의 당위를 설명하거나 단초가 무엇인지를 규정하기는 역시 쉽지 않지만 '수능'의 독서 지문에서는 '흘리는 정보가 없다'는 관점에서 접근해보았으면 어땠을까. 괜히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를 '예약상의 급부'와 '본계약상의 급부'로 나누지 않았을 것이며, 괜히 원래의 급부 내용에 대해 언급한 것이 아닐 것이다.

만약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계약상 권리자가 가진 권리 실현을 방해했다면 계약상 권리자는 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 고의나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돈으로 배상할 채무를 지기 때문이다. 다만 계약상 권리자에게 계약 상대방이나 방해자 중 누구라도 손해 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도 사라진다.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만약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계약상 권리자가 가진 권리 실현을 방해했다면 계약상 권리자는 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 고의나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돈으로 배상할 채무를 지기 때문이다.

어 타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아까는?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었었네. 아까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통해 손해배상채무를 지게 했었는데, 지금은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을 통해 손해배상채무를 지게 하고 있네. 손해배상 채무로 손해라는 문제의 이유를 해소하는 것은 똑같고 근거가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으로 다르네.

다만 계약상 권리자에게 (계약 상대방이나 방해자 중 누구라도 손해 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도 사라진다.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계약 상대방은 아까의 채무자, 방해자는 지금 얘기하는 타인이겠다. 둘 중 하나라도 손해 배상을 하면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다른 쪽의 배상 의무도 사라진다고. 아 손해 배상 채무로 동일했었다.

->

**\*\* 서두에서의 첫 논의범주(방향/흐름) 종료 후 이어지는 다음 문단에서는 앞 문단(들)과의 관계를 설정해 주어야 한다. 보통 해당 문단의 논의범주가 그렇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 여기에서는 '만약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계약상 권리자가 가진 권리 실현을 방해했다면 계약상 권리자는 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말을 보고 아까는 채무자에게 책임을 묻는 일반적인 경우였다는 점을 인지해준 뒤 아 이진 급부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생기는 특수한 경우구나 하고 논의범주를 확정해 주는 것.

**\*\*\* 앞에서 정리한 개념/서술 등이 재진술,구체화/대비되고 있을 때 그것을 끌고 내려와서 넣어 읽는다. => 상향식 독해**

- 여기서는 급부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생기는 일반적인 경우 채무자가 /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른 -> 손해 배상 채무를 진다를 끌고 내려와서 짝

과 쌍을 맞춰 타인이 / 피해를 끼치는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 손해배상채무를 진다 에 붙여 읽어주는 것.

+ 이상이론 : 아까 잠시 '계약의 유형에 따른 문제 양상'이라는 논의범주가 이어지지 않자 다음 논의로 넘어갔다고 치고 잠시 버티자고 했던 것을 기억하는가. 어라 그런데 지문이 끝날 때까지도 해당 논의범주를 구체화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았다. 2006 키트지문 등에서 이렇게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논의범주가 붕 뜨면 후에 이를 구체화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지문에서는 뒷 내용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 사후적으로 문제에서라도 유형에 따라 문제양상을 나누고 있는지를 보았지만 전혀 그런 내용이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결론을 내리자면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논의범주가 붕 뜨면 뒤에서 구체화해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주자면 그렇다. 결국 우리는 뒤에서 구체화해준다 그렇지 않든, 지문이 끝날 때까지 이 논의범주를 끌고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다음 문장에서 논의범주가 잠시 전환되었음을 인지함으로써 급부 불이행의 일반적인 경우와 특수한 경우라는 새로운 논의범주를 따낼 수 있었다는 효용도 있었으므로 여전히 유효한 분석으로 간주해줍시다. 솔직히 앞으로도 이렇게 후술해주지 않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해당 시점에서 논의범주 바뀌었음을 알아야 그 뒤 내용을 잘 정리해서 기억해서 문제로 갈 수 있습니다. 기억해줍시다.

1. ⑤

정답 해설 : ⑤ 국한이라는 말이 거슬린다. 타인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을 지웠었다.

- ① 계약이 성립하면 그 효력으로 채권이 발생했고 딱히 추가 합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는 없었던 것 같다.
- ② 어 그게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였다.
- ③ 권리자가 의사표시하면 동의 필요하든 그렇지 않든 본계약이 성립했었다.
- ④ 기억 안 나서 1문단 돌아가 봤더니 그렇단다.

2. ③

정답 해설 : ③ 승차권을 미리 구입해두는 것은 계약을 미리 성립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채권의 행사 시점을 미래로 정해두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 ①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도 계약이니까 효력으로 채권 발생시키는데, 채권은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권리라고 했으니까 기차탑승 시켜주는 것 요구할 권리고 특정한 행위인 급부는 기차탑승 시켜주는 것이겠다.
- ② 탑승하지 않는 것은 채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겠다.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는 급부를 이행할 권리인 채무로, 기차탑승을 시켜주는 것에 대한 의무이다.
- ④ 계약 없이? 승차권 구입도 예약은 아니지만 계약이라고 했다.
- ⑤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예약이다.

3. ①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예약상 급부	ㄱ	ㄴ
본계약상 급부	ㄷ	식사 제공

# <보기> 분석 : 표와 같이 제시된 <보기>는 우선 가로열과 세로열의 항목을 확인한 뒤, 본인 제일 기억이 잘 나거나 힌트가 주어져 있는 곳부터 판다.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에 대해 정리한 것이란다. 지문 읽으면서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쪽이 흐름에 더 주요하므로 ㄱ부터 파악해보자면, 예약의 첫 번째 유형에서 발생하는 권리인 채권은 급부로 '동의'를 가졌던 것이 기억난다. 그렇게 하여 성립하는 본계약상의 급부는? 돌아가서 확인해보니 급식 대금 내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반면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은 보니까 본계

약상 급부가 식사제공이라고 나와 있고 예약상 급부를 확인하기 위해 돌아가 보면 예약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에서는 딱히 급부로 승낙을 설정할 필요 없이 예약상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도 본계약이 성립했던 것이 기억난다. 혹은 잘 모르겠다고 판단하고 확실한 선지인 ㄱ과 ㄷ으로 선지를 소거해본다.

정답 해설 : ① 우선 ㄱ과 ㄷ을 명확히 잡아주었으면 답은 쉽게 고를 수 있다.

+ 이상이론 : 다만 사후적으로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예약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에서의 예약상 급부인 ㄴ선지로 고를 수 있는 것이 '없음'과 '식사 제공 계약 체결'이기에, ㄴ선지부터 고민했던 학생들이라면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다. 결론부터 내리자면, 이는 지문에서 두 번씩이나 반응지점을 주었으므로 미리 읽어두어야 할 정보이다. 안타깝지만 19수능 계약 지문의 첫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이 능동적인 독해에 대한 평가는 어쩌면 현재의 수능 국어 시험지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으로 상향식 독해와 더불어 학생들이 스스로 극복해내기에 상당한 곤란함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어쩔 수가 없다. 제시하는 족족 경험치로 쌓아 두고 시험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글이 주어질 때도 똑같이 반응하는 연습을 거치는 수밖에. 대신 이 책은 정확한 반응지점과 그곳에서 보아야 할 올바른 사고와 행동을 제시하는 데에 주력할 것을 약속한다.

부가적으로 ㄷ에 대해서도 언급하자면 이것이야말로 지문에서 미리 확보하지 못하였으면 반성하셔야 할 선지이다. 여러분들이 '활자'에 근거한 소위 '구조독해'가 주는 편리함에 너무나도 빠져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예약의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누는 2문단에서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을 '채권'과 '예약완결권'이라는 '활자'로 나누어 읽어내셨을 것이고, 이에 만족하고 '본계약의 급부'까지는 읽어내지 못하셨을 것이다.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성질'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단초로 하여 위의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끌고 내려오셨어야지. 그랬다면 지문에서는 -> 이상이론에 적어두었던 것처럼 결국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본계약을 통해 어떻게 확보한다는 것인지까지 읽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랄도 있었고 / 문제에서 돌아가더라도 -> 권리자인 선정된 업체가 본계약에 따른 채권을 갖는다는 판단을 용이하게 하여 본계약상의 급부를 회사입장에서의 급식 제공이 아닌 대금 지급으로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4. ④

<보 기>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있는 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을과 예약을 하여 행사 당일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받기로 했다. 갑이 시간에 맞춰 미용실을 방문하여 머리 손질을 요구했을 때 병이 이미 을에게 머리 손질을 받고 있었다. 갑이 예약해 둔 시간에 병이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하여 ㉠ 갑은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

# <보기> 분석 : 항상 이야기하지만 지문과의 연결, 즉 서술을 바탕으로 항목을 확보하는 행동이 중요하다.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머리 손질 요구를 본계약 체결 요구로 읽어주시고 병이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하여 타인이 끼어들어서 피해를 끼치고 위법성이 인정되니 불법행위 책임으로 손해배상 채무를 지우겠군. 이라고 읽어주셔야 한다. 밑줄은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서 미용사가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 못할 시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 손해배상 채무를 지겠군으로 읽어주셔야 한다.

정답 해설 : ④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는 을이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진다. 병은 불법행위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어? 둘다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 손해배상채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을만 그러하다. 병 불법행위 책임. 항목 아웃.

- ① 지문 돌아가서 확인해보니 고의나 과실에서 일어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채무 불이행 책임 지운다고 한다. 을의 과실이 있다면야 더더욱 그렇겠고. 병이 갑에 대해 손해 배상 채무가 있다고 물어보면 피해를 끼쳤고 위법성이 인정되었으니 그러하다.
- ② 을의 고의가 있는 경우 을과 병이 손해배상 채무를 지느냐 했을 때 을은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 인해 져야 하고 병은 불법행위 책임으로 인해 져야 한다. 을이 배상을 하면 병은 채무가 사라지냐고 했을 때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한 쪽만 채무 이행해도 급부 내용이 같음으로 인해 다른 쪽도 채무가 사라진다고 했으니 맞다.
- ③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는 을이 고의나 과실에서 일어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한 상황이다. 을은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고 병도 불법행위 책임에 의해 손해배상 채무를 진다. 급부 내용은 손해배상으로 동일.
- ⑤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이 증명된 경우는 고의나 과실에서 일어난 것이 아님을 증명한 상황이겠다. 따라서 을은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안 진다. 이와 달리 병은 여전히 불법행위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진다.

5. ②

정답 해설 : ②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다라는 공통점이 있다.

- ① 권리를 소유하다와 감정을 느끼다라는 차이가 있다.
- ③ 어떤 일이 일어나다와 없던 것이 새롭게 일어나다라는 차이가 있다.
- ④ 책임을 따지다와 질문하다라는 차이가 있다.
- ⑤ 영향을 주다와 온 몸으로 뺏어나가다라는 차이가 있다.